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2. 29 선고 2015가단5063032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

피고1. A

2. B

3. C

4. D

5. E

6. F

변론 종결2015. 12. 18.

판결 선고2015. 12. 29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A은 37,804,470원 및 그 중 37,512,980원에 대하여 2011. 6. 16.부터 2012. 11.

30.까지는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2015. 7. 18.까지는 연 12%,

나. 피고 B, C, D, E, F은 피고 A과 연대하여 가.항 기재 금원 중 37,512,980원 및 이에 대하여

2011. 6. 16.부터 2015. 7. 18.까지는 연 5%,

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 ~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, 별지 청구원인 기재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판사이평균

별지